

<첨부>

지 원 서

1. 인적사항					
지원구분	상담사	지원직무	마음스케치북	접수번호	
성명	(한글)				
현주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가점 항목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보훈번호			
	☐ 장애인 여부	장애종별			
		장애등급			
		등록번호			
	☐ 저소득층 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2. 주요 경력사항				
※ 담당 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처(부서)	근무기간	근무월수(월일수)	직위(급)	주요업무실적

3.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종목	자격증번호	자격취득(예정)일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지원날짜 :

지 원 자 :

(서명)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지원직무	
-----	--	------	--

1. 자기소개서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2.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 또는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폰트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3, 줄간격 160mm, 글자색 : 검정색)
- ※ (유의사항) 작성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날짜 :

작 성 자 :

(서명)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구 분	☐ 강사(소속:) ☐ 일시(사업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전화(핸드폰) : 이메일:		
계좌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둔산종합사회복지관 (이하 “기관” 이라 함)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22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절차를 준수하며,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이용목적외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제공되지 않습니다. 제공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전화번호, e-mail, 계좌정보(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강사비 지급 및 강사관리 등 사업에 필요한 업무처리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관 사업에 필요한 업무처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2.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¹⁾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지급명세서(소득세 납부) 제출 항목	5년

☒ 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활동비지급 및 세금신고등 업무처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용

제공받는 곳	항목	제공목적	제공기간
국세청	성명, 주소	원천세신고	국세청 자료 제공시 까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e-mail, 계좌정보(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배분사업 수행 관련 증빙서류 제출	10년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활동비지급 및 세금신고등 업무처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4. 고유식별번호 제3자 제공·이용

제공받는 곳	항목	제공목적	제공기간
국세청	주민등록번호	원천세신고	국세청 자료 제공시 까지

☒ 위의 고유식별정보의 제3자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활동비지급 및 세금신고등 업무처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둔산종합사회복지관 귀하

1)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법령에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가능함. 국세기본법 시행령 68조(민감정보 및 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원천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에 따라 보유기간을 5년으로 함.